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9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김원이ㆍ기동민ㆍ김승원

김회재 · 박성준 · 소병훈

신정훈 · 안규백 · 양경숙

양이원영・양정숙・오영환

윤준병 • 이동주 • 인재근

최혜영 • 홍익표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 고 있어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님.

그런데 최근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진,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, 시청각 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, 이

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(안 제116조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 중 "간단한 문서를"을 "간단한 문서 등(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)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)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6조(참고문서의 게재) 의원이	제116조(참고문서의 게재)
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<u>간단한</u>	
<u>문서를</u> 회의록에 게재하려고	<u>간단한 문서 등(시청각</u>
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	<u>자료를 포함한다)을</u>
야 한다.	